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9021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902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130784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원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규봉

변론 종결 2021. 4. 1

판결 선고 2021. 4. 29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13078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 지목록 제1항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8.3.27.접수 제23079호로 마친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8 . 3. 27. 접수 제 22658호로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과 피고 사이에 2018 . 3. 26.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는청구 취지를 함께 기재하였으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을 재판상행사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법률적 효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등을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 부분은 소송법상 청구가 아니라 부인권 행사임을 명시하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보더라도 피고가 항소이유로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A의 피고에 대한 채무 8,055만 원을 빼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소극재산은 350,070,121원(= 430,620,121원 - 8,055만 원)으로 적극재산으로 확인된 3억 8,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사해 행위라 할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 행위라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인 46,620,121원(= 8,055만 원 - 3억 8,400만 원 + 350,070,121원)에 대하여만 성립할 뿐이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판결 등 참조).

2) 제1심 판결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A는 피고에 대한 8,055만 원의 채무까지 부담한 상태에서 피고와 2018. 3. 26.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가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파산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이 부분 판단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A의 피고에 대한 8,055만 원의 채무를 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전부가 법 제391조 제1호 고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김천수 판사 안성민

별지